

#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사(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자격규정

(제정 2011.03.25. 교무위원회)

(개정 2011.11.04. 교무위원회)

(개정 2013.01.28. 교무위원회)

(개정 2014.04.01. 교무위원회)

(개정 2018.02.26.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에서 수여하는 예술치료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의 취득 자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예술치료사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서 예술치료학을 전공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 심사에 통과된 자로서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예술치료사 자격취득을 위한 대상은 우리 대학교의 예술치료학과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예술치료사는 우리 대학교에서 예술치료학과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전공선택 과목을 포함한, 총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 혹은 사례연구발표를 통과하고 자격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2. 26)

**제5조 (인정과목)** 자격기준에 필요한 인정과목은 <표1> 과 같다.

**제6조 (편입생)** 편입학생은 4조, 5조의 자격기준에 준한다. 단, 편입학생은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중 택일할 수도 있다.

**제7조 (임상실습)** ① 예술치료사 자격취득을 위한 임상실습은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로 한다.

② 임상실습은 180시간으로, 우리 대학교 부설 예술치료센터 외에 병원, 유치원, 학교, 기관, 시설, 관련 개인연구소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후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임상실습일지(별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예술치료사 심사위원회는 예술치료학과장이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하며, 예술치료학과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4. 04. 01)

**제9조 (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0조 (자격신청)** 모든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예술치료사 자격심사 청구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임상실습일지(별지) 1부

4. 논문 혹은 사례연구 1부

<표1> (개정 2014.04.01)(개정 2016.01.25.)

영역		인정 과목
전공 필수		예술치료 인턴쉽A, 졸업논문연구, 예술치료 인턴쉽B, 임상사례 연구 및 발표
전공 선택	미술치료	미술치료기법1, 미술치료개론, 미술치료기법2, 미술매체연구, 청소년미술치료, 만다라미술치료, 가족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 특수(장애)아동미술치료,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유아동 미술치료, 미술치료 매체연구, 예술치료 매체연구, 예술치료 이론과 실제, 노인미술치료
	음악치료	피아노반주법1, 피아노반주법2, 예술치료건반악기클래스1, 예술치료건반악기클래스2, 음악치료개론, 음악치료이론과 실제, 노인음악치료, 예술치료기악실기1, 예술치료기악실기2, 예술치료를 위한 반주법1, 예술치료를 위한 반주법2, 대상별 음악치료1, 대상별 음악치료2, 음악치료방법론1, 음악치료방법론2, 장애아동 음악치료, 유아동 음악치료, 예술치료를 위한 특수악기 연주법1, 예술치료를 위한 특수악기 연주법2, 음악심리학, 치료적 노래 만들기1, 치료적 노래 만들기2, 예술치료노래지도법1, 예술치료노래지도법2, 기타연주법, 즉흥연주기술
	문학치료	글쓰기치료, 이야기치료, 아동청소년문학상담치료, 동작치료 이론과 실제, 문학치료 이론과 실제, 동작 분석과 표현, 창의적 동작치료 방법론, 연극치료 이론과 실제, 연극치료개론, 문학상담기술, 독서치료, 아동 문학치료 사이코드라마, 표현활동과 놀이
	심리 및 기타	상담의 이론과 실제1, 상담의 이론과 실제2,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문헌조사 및 논문작성법, 예술치료세미나A, 예술치료연구방법론, 예술치료세미나B, 임상슈퍼비전, 부모교육, 비행 및 부적응 상담치료

제11조 (삭제, 2014. 04. 01)

제1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의 이수과목과 학점은 이 규정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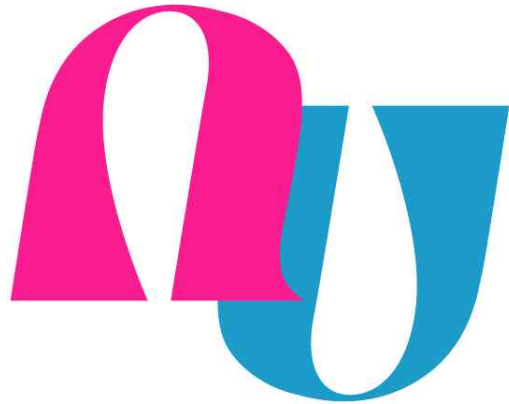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임 상 실 습 일 지



**대구예술대학교**  
DAEGU ARTS UNIVERSITY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수련생 인적사항

성명	한글 :		사 진 (3.5c ×4.5cm)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		
	☎ :		
근무처	주소 :		
	☎ :		
E-mail		휴대전화	
출신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졸업, 졸업예정자 (소재지: )		
경력사항			
소지자격증	자격증 명칭	발급기관	취득년월
비고			

실습사례 면접기록

치료형태	개인 / 집단	참여형태	리더/ 코리더/ 관찰자	사례번호	
치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총 회 / 시간)				
치료기관 및 장 소	기관명 : (치료장소 : )				
내 담 자 인적사항				가 계 도	
내담자의 특성 (정서적,신체적 특징,성장배경,가 족관계 등)					
주호소문제					
치료자가 파악한 내담자문제					
치료목표					
치료성과					

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주 제	활 동 내 용	기 대 효 과	준 비 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치료회기별 일지

결 재	실 습 생		기 관 장	
내 담 자				사 례 번 호
일 시	20    년    월    일 (    회기)			
주 제				
치료목표				
준 비 물				
활동과정				
평 가				
치료사 소 견				